

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지침 (학생용)

2022.11.14.(월)

1.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은 **대면평가 원칙으로(수업 특성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가 가능한 교과목에 한하여 일부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)** 진행하고자 합니다. 대면평가 기말시험은 각 단과대학에서는 철저한 발열검사로 시험장소 출입절차를 강화하고, 고사실 별 방역 소독, 마스크 착용, 응시자 간의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**기말시험**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

기말 대면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며, 학생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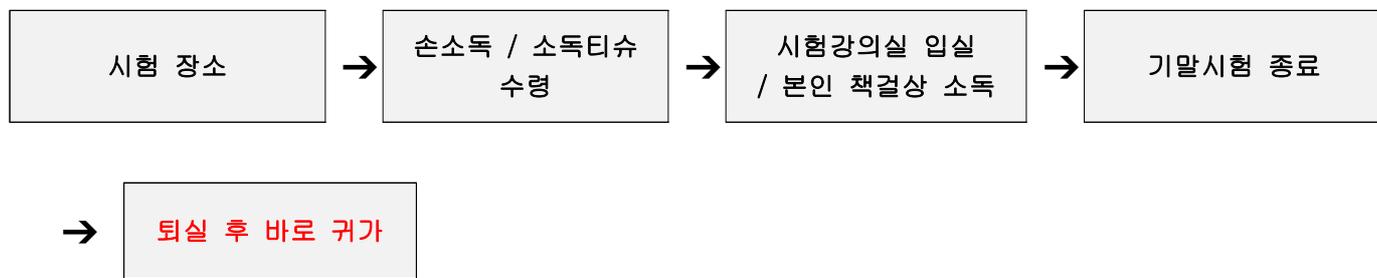
응시불가사유	학생 제출서류
2022-2학기 기말고사일 현재 국외 체류 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	① 국제팀에서 해당학생 명단을 교강사에게 제공 (해당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신청 학생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 제출 필요)
코로나19 확진자, 자가격리자(본인 및 동거인), 유증상자 중 기말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학생	①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
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	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

3.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절차

- ① 학생 :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까지 E-mail 제출
- ② 교강사 :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

*** 신청서 제출 시한 :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-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**

4. 대면시험 학생 동선



5. 대면시험 시 학생 주의 사항

구분	주의사항
기말 대면시험 전	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 ② 마스크 착용 의무 ③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호흡기증상, 메스꺼움 등)이 있을 경우 절대 등교 금지 (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E-mail로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)
기말 대면시험 기간 대면시험 강의실	①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본인 책걸상 셀프 소독 ② 강의실 입실 후 절대 대화 금지 (시험 관련하여 감독관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강의실 앞으로 이동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후 질문) ③ 기말시험 종료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
시험당일 학교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	① 코로나19 유증상(발열, 호흡기증상, 메스꺼움 등)이 있을 경우 별도의 대기 공간으로 이동 → ② 한양보건센터에 연락(4366) → ③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작성 → ④ 한양보건센터의 안내에 따라 귀가 → ⑤ 수업담당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기말평가(온라인 및 과제평가 등) 진행 ※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경우 대면 기말시험을 볼 수 없으며, 이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.

